

■ 법률 칼럼

취업이민 첫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취업이민 과정의 첫 단계로 흔히 Perm이라고 통칭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허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Labor Certification(노동승인)

잘 알려진 대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단계와 실제 이민 신청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미국 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노동승인 신청을 심사합니다.

1. 구인광고의 적절성

취업이민의 첫 과정은 취업이민 스폰서가 미국 연방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영주권 신청 허가를 요청하는 노동승인 단계입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미국내 거주자(미국내에서 노동이 가능한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노동허가증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적당한 지원자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취업이민 신청자를 고용주 회사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 노동부는

고용주가 미국내 거주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종에 대한 구인 광고를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주 회사로 오는 모든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현재 고용주 회사의 직종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합니다. 고용주는 이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노동승인 과정은 미 노동부가 고용주가 적절하게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보내진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을 했는지를 점검합니다.

2. 사업상의 필요(Business Necessity)

또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심사 과정에서 현재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 회사에 꼭 필요한 직종인가를 고려

합니다. 만약 고용하려고 하는 직종이 고용주의 사업상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인 경우 그 위한 회사만을 위한 전문 회계사 (CPA)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미 노동부는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노동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직종의 한시성 (finite)

노동부는 노동승인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지속적(permanent)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한시적(finite)으로만 필요한 직종인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의 비즈니스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광고 요건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도록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직종을 정하실 때도 고용주 회사가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직종이 영구적 지속적으로 고용주 회사에 필요한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승인의 심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Audit)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잘 준수해 강화된 심사와 감사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치과 임플란트로의 접근

“이가 없으면 무엇으로 살지?”
“잇몸으로 살지.”

누구나 한 번쯤 이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썰렁한 개그처럼 들리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치과라는 분야가 없었을 때 이 말은 당연한 상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라믹이 개발되어 치과 진료에 일반적으로 사용 되기 전인 1970년 대에는 금속이 크라운을 만드는 주재료여서 앞니처럼 심미적인 자연스러움을 요구하는 부위에 사용하는 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당시 최대한 금속의 시커먼 색이 보이지 않게 하려는 방법으로 창문의 창틀을 응용한 크라운 제작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대 들어서 재료 공학의 발전으로 세라믹이 치과계에 소개되면서 심미치과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파절 되기 쉽다는 세라믹의 단점이 기술력으로 보완되면서 이제는 심미치과 분야뿐 아니라 기능이 강조되는 어금니 부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미적 요구가 큰 부위에 금속 색이 드러나는 치료법은 거의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라믹이나 합성수지처럼 자연치아 색을 가까이 재현해 낼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지던 것이 역사의 뒤안에 묻히고 새로운 개발된 방법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가 없는 경우 틀니를 만들어 잇몸 위에 얹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실된 이를 대신할 잇몸이 무척이나 중요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틀니를 받던 잇몸은 반복적으로 무리를 주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무너져내려 결국 틀니를 견고하게 떠받치지 못하게 될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기존



사진=shutterstock

틀니가 제대로 맞지 않아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고 새로운 틀니에 의해 잇몸과 턱뼈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악순환을 통해 결국 틀니조차 사용할 수 없을 단계까지 이르기에도 했습니다.

주변 잔존 치아가 튼튼하고 상실된 치아의 수가 몇 안 되고 주변 치아가 건강한 경우 그 치아들을 이용해서 상실된 치아 기능을 복원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고정성 의치라고 하는데 보통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 치료법은 상실 부위 주변 치아들을 삭제하여 크라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에 가치를 넣어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고정성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넣었다 뺐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주변 치아가 상실된 치아들의 기능을 나눠 짊어질 만큼 튼튼하지 못하거나 상실 치아의 수가 너무 많아 잔존 치아들만으로 저작력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분틀니가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지만 이 또한 잔존치아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 1353호에서 계속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Buena Park에서 Fullerton으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